

보육교사 자격기준 설명회 일정

| 시간 | 내용 |
|-------------|---------------------|
| 13:00~13:30 | 등록 |
| 13:30~14:00 |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보건복지부) |
| 14:00~15:30 | 보육교사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
| 15:30~15:40 | 휴식 |
| 15:40~16:30 | 단체신청 담당자 교육 |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2019. 11.





목차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2.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3. 보육실습 세부기준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5. 질의응답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주요 변경내용(교육영역 변경)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개정)

(개정 전)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 ▶ 보육필수 (6개 과목)
- ▶ 발달 및 지도 (1과목 이상)
- ▶ 영유아·교육 (6과목 이상)
- ▶ 건강·영양 및 안전(2과목 이상)
-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1과목 이상)
- ▶ 보육실습

(현재)

교사 인성 등 3개 영역

- ▶ 교사 인성
(2과목 필수)
- ▶ 보육지식과 기술
(9과목 필수, 4과목 선택)
- ▶ 보육실무
(2과목 필수)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대상별 적용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입학년도 기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편입.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입.재입학한 동학년생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 기준 적용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교육영역별 교과목 내용 (2017.1.1.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 영역 | 구분 | 교과목 | 과목(학점) |
|-------------|---------------------------|--|------------------|
| 교사 인성 | 필수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 (6학점) |
| 보육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 (27학점) |
|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12학점 이상) |
| 보육실무 | 필수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 전체 |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 |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대면교과목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1시간 이상 출석시험)**

| 영역 | 교과목 |
|-----------|---|
| 교사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대면 |
| 보육 지식과 기술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대면 |
| 보육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대면 |

단, 보육실습은 8과목 이상 출석, 1시간 이상 출석시험 제외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교과목 이수 기준

| 구분 | 2014.1.1.~2016.12.31. 입학자 | 2017.1.1.이후 입학자 |
|---|---|---|
| 교과목 이수기준 |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개정,2014.3.1.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 (2016.1.12.개정,2016.8.1.시행) |
| <p>※ 다만, 2017.1.1.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의 대상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6주, 240시간)에 따라 이수해야 함</p> <p>- 대상교과목 :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p> | |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적용사례

- ❖ 2017. 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9년 2학기에 “보육교사론” 을 이수 하는 경우 ➡ **대면교과목 기준 적용**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시험)
- ❖ 2016. 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9년에 시작하는 계절학기에 “아동복지(론)” 을 이수한 경우 ➡ **대면교과목 기준 적용**
- ❖ 2015. 3월에 입학한 사람이 “아동복지론” 대신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인정**

※ 2017.1.1.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입학자는 개정된 교과목명으로 이수 필수 교과목명이 다른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에 따름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별도의 심의 없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

| 영역 |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
|-----------------|-------------------|-------------------------|
| 보육 지식과 기술 | 보육학개론 |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
|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
| 보육실무 | 보육실습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종전기준(2017.1.1.전) 대학 입학자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영역 |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
|-------|-------------------|---------------------|
| 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 아동 권리와 복지 |
| 영유아교육 | 아동문학 | 아동문학교육 |
|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종전기준 (2017.1.1. 전) 대학 입학자가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 불가시 교과목 이수 방법

| 구분 | 인정기준 |
|----------------------------------|--|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아발달+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
| | 유아발달+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
| 「영아발달」 「유아발달」 2과목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발달+종전기준 6개영역 중 '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 | 영유아발달+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현행기준(2017.1.1.이후) 대학 입학자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영역 |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
|------------------------|-------------------|---|
|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 영유아발달 | 영아발달 + 유아발달 이수 → 인정 ※ 단, '영아발달' '유아발달' 과목 이수로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개정 영역 (3개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적용사례

- ❖ 2016년에 대학을 입학하여 “영아발달” (3학점)을 이수하고 2016년에 휴학, 2019년에 복학하여 “유아발달” 을 이수해야 하지만, “영유아발달 (3학점)을 이수한 경우 ➡ 인정
- ❖ 2016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보육필수영역에서 “아동복지론(3학점),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과정(3학점), 보육교사론(3학점)을 이수하고 휴학, 2019년에 복학하여 “영아발달” “유아발달” 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 ”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영유아발달(3학점)” 을 이수하고, 발달 및 지도영역에서 “1과목(3학점)를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할 경우 인정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보육실습 기준

| 구분 | 2014.1.1.~2016.12.31. 입학자 | 2017.1.1.이후 입학자 |
|----------|--|--|
| 실습 기간 | 4주, 160시간 (야간대학 등의 경우 분할실습 가능) ※ 2017.1.1.이후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6주, 240시간 적용 | 6주, 240시간 (2회로 분할실습 가능) |
| 실습 기관 |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 2017.1.1.이후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평가등급 A, B(또는 인증유지)인 어린이집에서 실습 |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등급 A, B(또는 인증유지)인 어린이집 |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의무평가제로 전환(19년6월 시행)되면서
실습기관 기준이 '평가인증 유지' 에서 'A, B등급 이상' 으로 변경됨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 제출 서류

| 구분 | 2014.3.1~2016.12.31. 입학자 | 2017.1.1. 이후 입학자 |
|--|---|---|
| 제출서류 |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 등록시 - 인가증 사본 -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교사1인당 3인 이내 실습지도확인서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유치원 실습) |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등록시 제출서류는 왼쪽과 동일함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교육기관에서 대면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 내 표기, 또는 '대면교과목 이수 확인서' 제출(자료집 부록 확인) |
| *기타 제출 서류 - 방송통신대학교 추가서류 : 전체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연도 확인서,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재입학기간이 긴 경우 휴·복학, 재입학 여부 확인), 대면교과목 이수 확인서 | |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자

유사교과목 심의란?

- 법령교과목과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기 인정된 유사교과목은 제외)
-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학과에만 적용**(타 대학은 미적용)

유사교과목 심의 제출서류

- 유사교과목 심의요청 공문(대학장 또는 학과장 발행)
- 유사교과목 확인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
- 해당 교과목의 이수연도·이수학기 주차별 강의계획서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대상별 적용기준

- 학점은행제 등으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위취득일 기준**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영남사이버대학, 세계사이버대학 등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교육영역별 교과목 내용 (2018.1.1. 이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

| 영역 | 구분 | 교과목 | 과목(학점) |
|-------------|--------------------|--|------------------|
| 교사 인성 | 필수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 (6학점) |
| 보육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이동음악(또는 이동동작, 아동미술), 이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이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 (27학점) |
| | 선택 | 이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이동문학교육, 이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이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12학점 이상) |
| 보육실무 | 필수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 전체 |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 |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대면교과목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1시간 이상 출석시험)

| 영역 | 교과목 |
|-----------|---|
| 교사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 보육 지식과 기술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 보육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단, 보육실습은 8과목 이상 출석, 1시간 이상 출석시험 제외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의 교과목 이수 기준

| 구분 | 2014.3.1.~2017.12.31. 학위취득자 | 2018.1.1.이후 학위취득자 |
|-------------|---|---|
| 교과목 이수기준 |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개정,2014.3.1.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 (2016.1.12.개정,2016.8.1.시행) |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3.1. 이전 아래의 대상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 (6주, 240시간)에 따라 이수한 경우로 인정

- 대상교과목 :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적용 사례

- ❖ 2020. 2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예정인 사람이 2017. 2월까지 “아동복지(론)” 을 이수한 경우
 - ➡ 개정규정에 따른 대면교과목 “아동권리와 복지” 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이수’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이수년월 기준
- ❖ 2020. 2월에 「 평생교육법 」 에 따른 대학에서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7. 3월 이후에 “아동미술” 을 이수한 경우 ➡ 대면교과목 기준 적용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시험)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별도의 심의 없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

| 영역 |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
|-------------|-------------------|-------------------------|
| 보육지식과 기술 | 보육학개론 |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
|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
| 보육실무 | 보육실습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2018.1.1.전 학점은행제 등 학위취득자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영역 |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
|-------|-------------------|---------------------|
| 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 아동 권리와 복지 |
| 영유아교육 | 아동문학 | 아동문학교육 |
|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2018.1.1.이후 학점은행제 등 학위취득자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영역 |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
|----------------|---------------------|-------------------|
|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 아동문학교육 | 아동문학 |
| |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2018.1.1.0이후 학점은행제 등 학위취득자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영역 |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
|------------------------|-------------------|--|
|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 영유아발달 | 영아발달+유아발달 이수 ➡ 인정 ※ 단, '영아발달' '유아발달' 과목 이수로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개정 영역 (3개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 |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보육실습 기준

| 구분 | 2014.3.1.~2017.12.31. 학위취득자 | 2018.1.1.이후 학위취득자 |
|----------|-----------------------------------|--|
| 실습 기간 | 4주, 160시간 (야간대학 등의 경우 분할실습 가능) | 6주, 240시간(2회로 분할실습 가능) ※ 2018.1.1.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기준 4주, 160시간 적용 |
| 실습 기관 |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또는 A, B 등급 이상)하는 어린이집 |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의무평가제로 전환(19년6월 시행)되면서
실습기관 기준이 '인증 유효기간 유지' 에서 'A, B등급 이상' 으로 변경됨

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학점인정기관 적용 대상자

➤ 제출 서류

| 구분 | 2014.3.1~2017.12.31. 학위취득자 | 2018.1.1. 이후 학위취득자 |
|------|---|---|
|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학위증명서(학위수여기관장 발행)② 성적증명서③ 보육실습확인서 <p>※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 등록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가증 사본-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교사1인당 3인 이내 실습지도확인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유치원 실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학위증명서(학위수여기관장 발행)② 성적증명서③ 보육실습확인서 <p>※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등록시 제출서류는 왼쪽과 동일함</p> <p>※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이수기준 충족 시 성적증명서 내 대면표기, 또는 '대면교과목 이수 확인서' 제출(자료집 부록 확인)</p> |

2.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적용대상

☞ 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한 사람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

2016.8.1. 이후 '입학자' 부터 적용

2.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교육과정 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3개 영역 **22과목 65학점** 이수 필수(과목당 평가점수 70점 이상)
- 단,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2급 기준 준용**(평가점수 80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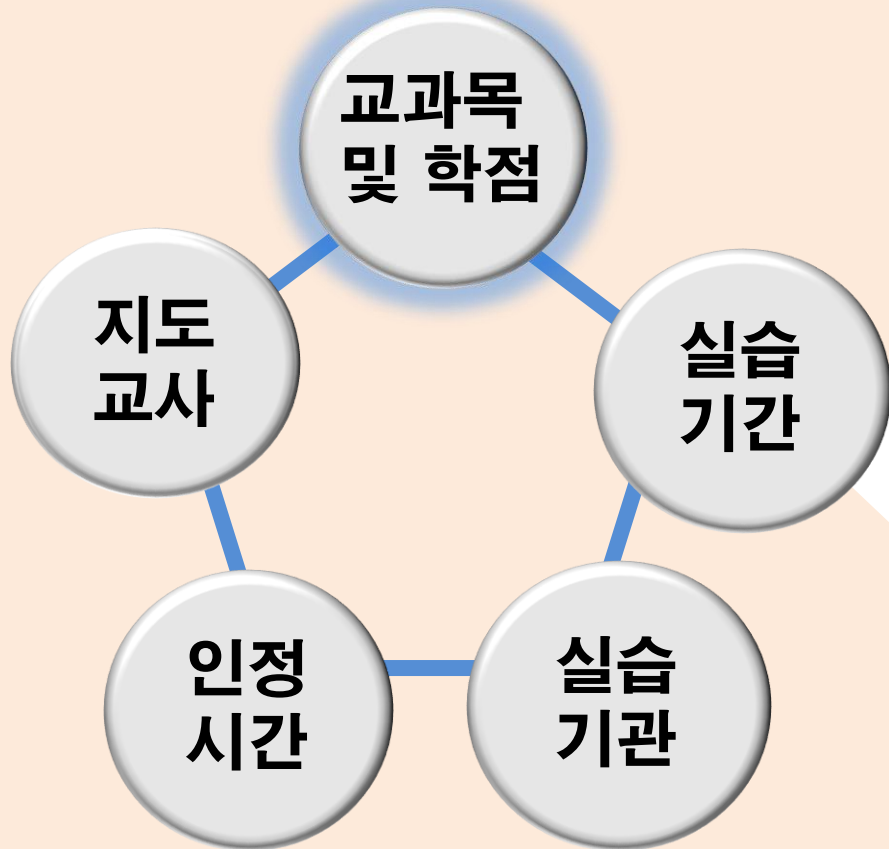
|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
|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3], 아동권리와 복지[3] | 2과목 (6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영유아발달 및 지도[3], 아동생활지도[3],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 놀이지도[3], 언어지도[3], 아동음악과 동작[3], 아동미술지도[3], 아동수학지도·아동 과학지도[3], 영유아교수방법론[3], 교재교구개발[3], 부모교육[3], 영유아건강지도[2], 영유아 영양지도[2], 아동안전관리[3], 어린이집 운영관리[3] | 18과목 (52학점) |
|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실습[3], 보육실습[4] | 2과목 (7학점) |
| 전체 | 22과목(65학점) 이상 | |

3. 보육실습 세부기준

| 구분 | 기준 |
|---------|---|
| 실습 운영 | ·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
| 실습 기간 | · <u>6주, 240시간</u>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 실습 기관 | · 보육정원 15명 이상 · 의무평가제 결과 A, B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실습시작일 기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실시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 실습 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
| 실습 인정시간 | ·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 기준 |
| 실습의 평가 |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

3. 보육실습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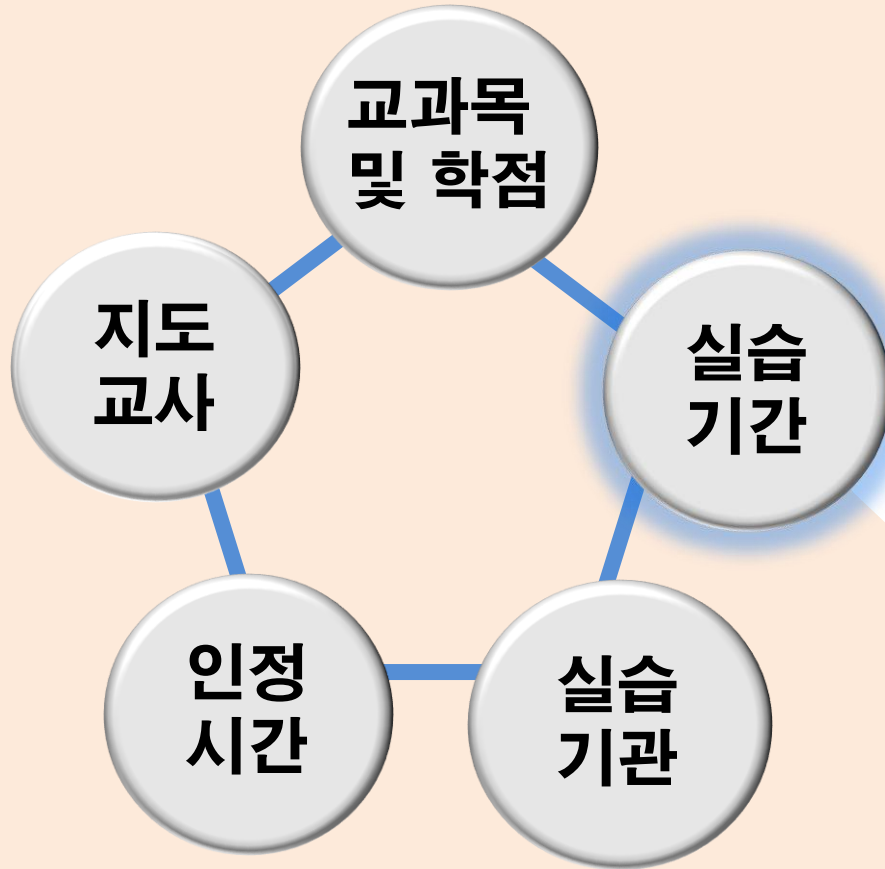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으로 운영
 - 평가점수 80점(B학점) 이상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 현장실습 인정
 - 3학점 기준으로 이수
- ※ 보육실습을 1, 2로 나누어 개설한 경우 합산한 학점이 총 3학점 이상

3. 보육실습 세부기준

◆ 실습기간



- **6주 240시간**
- 2회로 분할실습 가능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3. 보육실습 세부기준

◆ 실습기간

2회 분할 실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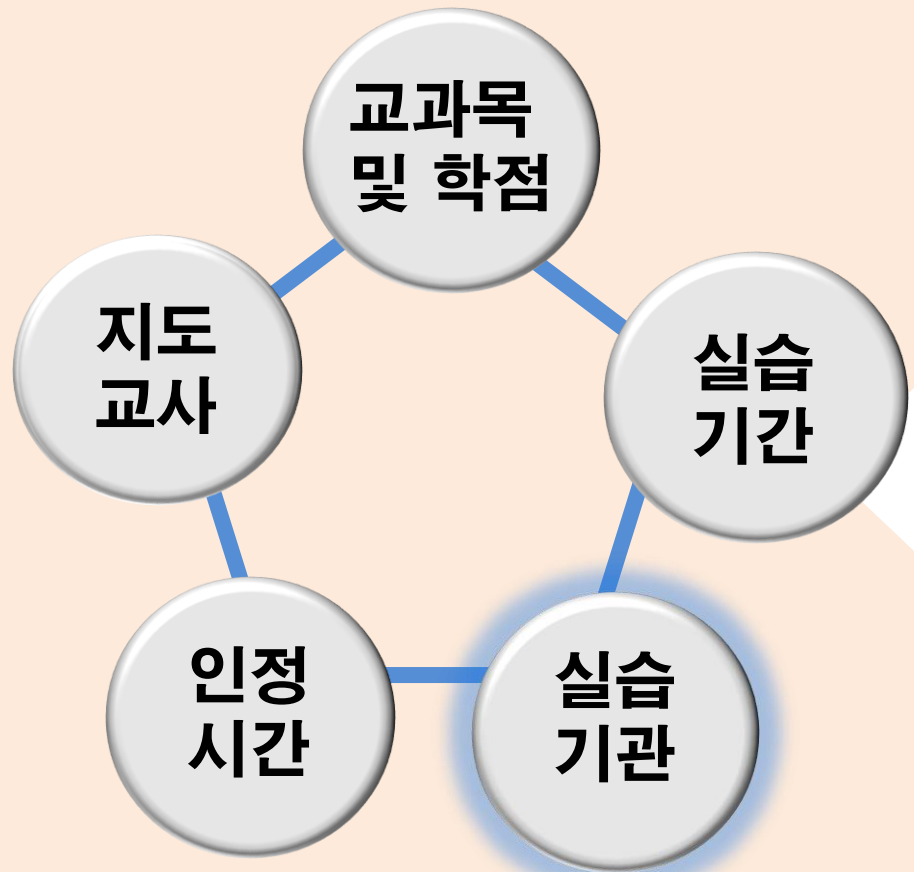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전후 방학 포함)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학기를 달리하여 보육실습 교과목(1,2)을 개설한 경우
➔ 개설학기 전후 방학에 각 1회씩 나누어 실시

실습 실시 방법

-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2016.12월에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 4주, 160시간
 -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사람이 2017.2월에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 4주, 160시간
- ※ '이수'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 기준

3. 보육실습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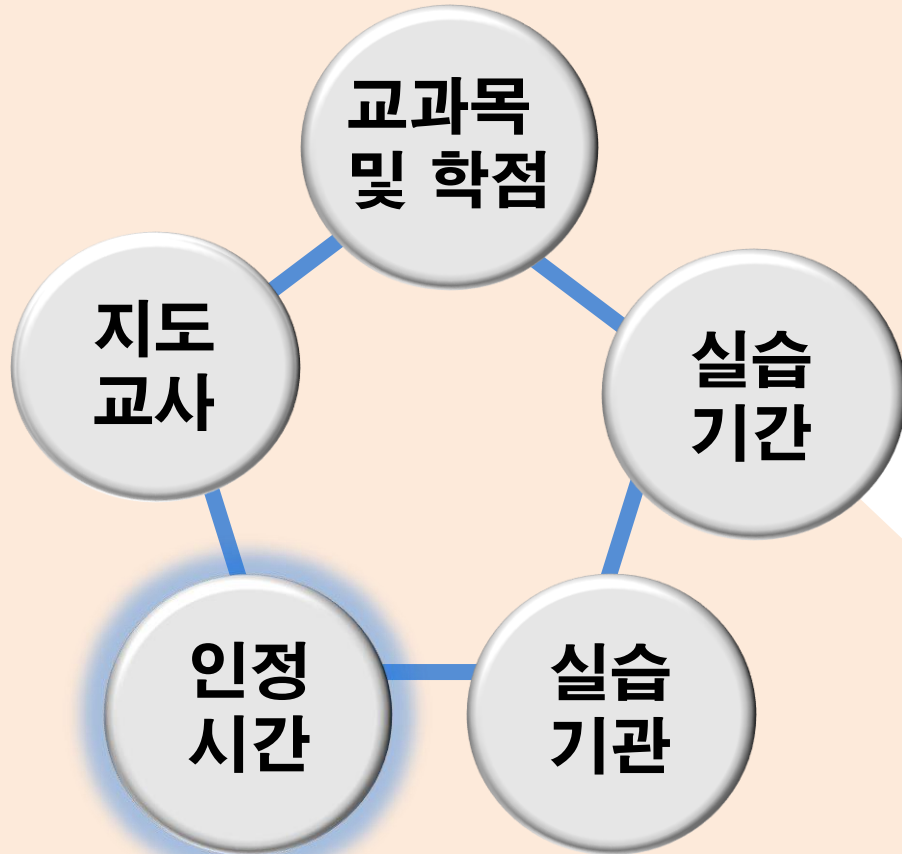
◆ 실습기관



| 구분 | 기준 |
|----------------------------------|---|
| 공통사항 | · 보육정원 15인 이상 |
| 선택사항 (세 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에 해당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평가제 결과 A, B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2019.6 이후) · 평가인증제 결과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7.1.1.0 후) ·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

3. 보육실습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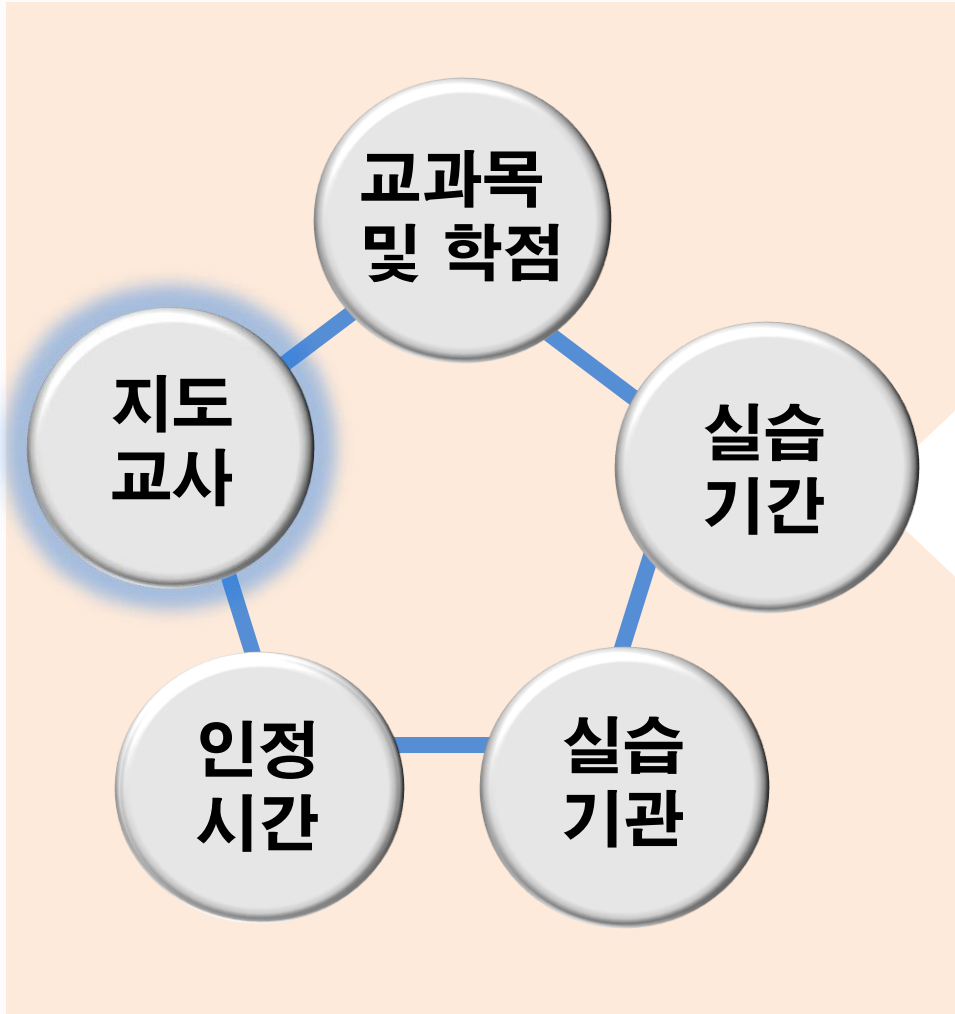
◆ 실습인정시간



- 연속하여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의
실습 인정
- 보육실습 시간은 하루에
8시간

3. 보육실습 세부기준

◆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3. 보육실습 세부기준

◆ 보육실습확인서

보육실습확인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원장, 학과장(교육원장) 직인을 받아 원본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2017.1.1. 이후 양식)원본
 -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
 -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확인서(유치원 실습)

3. 보육실습 세부기준

◆ 보육실습확인서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필수)

| 이 름 | 생년월일 | 양성교육기관명 |
|-----|------|---------|
| | | |

2. 실습기관

| 실습기관명 | 실습기관 보육정원 | | |
|--------------------|--------------------------|-------------------------------------|-------|
| | | 최초인가일 | 년 월 일 |
| 기과종류 | | | |
| 어린이집 평가 (인종) | 평가결과(기간) 평가인종 유지기간 | 등급(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락처 |
| 주소 | | | |

3. 실습 지도교사

| 이 름 | 자격 종류 | 자격번호 |
|-----|-------|------|
| | | |

4. 실습 기간

| 실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주간) |
|------|---------------------------------|
| 실습시간 | 총 시간(매주 요일 ~ 요일까지, 오전 시 ~ 오후 시) |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실습기관 시설인증서 사본 1부 2.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보육교사 1급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1부 3.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단 13. 3. 1. 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보육실습확인서


- **평가결과(기간)추가**
 “보육실습 시작 당시의 어린이집 정보를 기재”
- **해당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면
평가인증 유효기간 기재**

※ 해당 양식은 어린이집 정보공시 내용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 예정.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양식 확인(11월 중 공지 예정)

3. 보육실습 세부기준

◆ 보육실습 지도

▶ 보육실습 지도 시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콘텐츠 활용



온라인교육
Online Education

대한민국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Advanced Education by Research and Experience

[🏠](#)
[로그인](#)
[회원가입](#)

온라인교육과정
수강신청
마이페이지
학습지원

수강신청

교육과정 전체과정보기

평가인증의 이해

- 2차 지표(40인 이상)
- 2차 지표(39인 이하)
- 3차 지표(시범)
- 통합지표

다문화보육

시간연장형 시간제보육

안심보육교직원 연수

문서간소화 등 원장 집중 교육


보육실습 지도



- 양성기관용 보육실습 지도
- 어린이집용 보육실습 지도

보육사업안내(지침) 교육

보육실습 지도

[🏠](#)
[수강신청](#)
▶
[보육실습 지도](#)



| 번호 | 과정구분 | 과목명 | 자세히보기 | 신청하기 |
|--|---------------|---------------|-------|------|
|  [1] | 양성기관용 보육실습 지도 | 양성기관용 보육실습 지도 | 자세히보기 | 신청하기 |
|  [2] | 어린이집용 보육실습 지도 | 어린이집용 보육실습 지도 | 자세히보기 | 신청하기 |

3. 보육실습 세부기준

◆ 보육실습 유의사항

실습기관 기준

확인

- **어린이집 평가등급(의무평가제) 또는 인증유지상태(평가인증제)(실습 시작일 기준)**
 - ※ 미인증, 인증종료, 인증취소 사유 발생, 평가등급(A, B) 미만 여부 확인 必
 - ※ 2회로 분할 실습의 경우, 각각의 분할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 유지 必

실습년도별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확인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실습생 미등록시, 실습년도에 맞는 확인서 양식 사용**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서식자료] 에서 다운받아 사용

비연속 실습 증빙자료

확인

- 어린이집의 가정학습기간, 실습생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제출
 - ※ **가정통신문(직인 必), 진료확인서 등**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자격기준

(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 2012.8.4. 이전 (편)입학자 : 8과목 16학점
- 2012.8.5. 이후 (편)입학자 : 8과목 24학점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 표준교과개요

표준교과개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특수 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의 운영을 위한 지침



활용 방법

'19년 2학기부터 양성기관에서 교육내용 편성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표준교과개요를 유사교과목 심의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교과목 개설 시 참고**

※ 자료탐재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

5. 질의응답

Q.1) 대면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출석 수업의 8시간을 몇 차례에 나누어 수강이 가능한가요?

대면교과목의 8시간의 출석수업 시간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총 출석수업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 1회 이상의 출석 시험은 별도 실시

5. 질의응답

Q.2) 현장실습 시작 시점에는 평가 받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으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평가 A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장실습 시작 당시 평가점수 A 또는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어야 하므로 이후에 A 또는 B 등급을 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제 시행 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시작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5. 질의응답

Q.3) 현장실습 시작 당시 실습기관이 평가점수 B등급이었으나 실습 중 C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실습이 인정될 수 있나요?

현장실습 시작 당시 A 또는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실습 도중 등급이 바뀌어도 인정됩니다. 다만, 실습시작 당시 실습기관이 A 또는 B등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정보공시화면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질의응답

Q.4) 2020.1.10이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 예정입니다. 2017.2월 이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하였는데 새로운 기준(6주, 240시간)으로 보육실습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2018.1.1 이후 학위 취득 예정이더라도 2017.3.1 이전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완료한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질의응답

Q.5) 2020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으로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2020년 2학기에 ‘보육실습’ 교과목으로 4주 160시간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습 교과목 명칭이 달라도 보육관련 교과목으로 각각 인정이 되나요?

**‘보육실습’의 유사교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보육현장실습’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명칭이 달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질의응답

Q.6)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연차(여름휴가 또는 연수) 혹은 병가일 경우 공백기간에는 보육실습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진 실습지도교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기존 실습지도교사의 공백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에게 실습 지도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공지사항

◆ 취업예정자 선처리 안내

목적

- 어린이집에 채용예정인 예비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하여 보육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대상

- 어린이집에 채용예정인 예비보육교사(자격증 신청 후 서류제출 완료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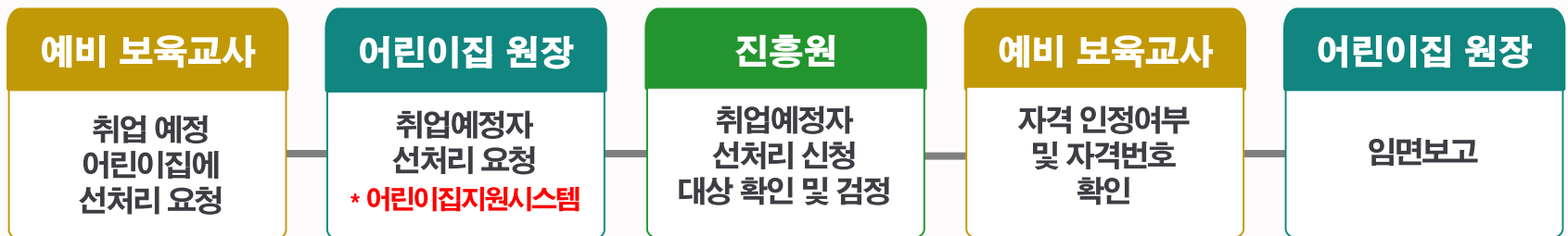
신청기간

- 향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에정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취업예정자 선처리 메뉴에서 신청

[취업예정자 선처리 절차]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및 국가자격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콜센터 (☎ 1661-5666) 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